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20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허성무 · 한정애 · 김용만
김종민 · 전종덕 · 김정호
박선원 · 김동아 · 조인철
전진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화번호 등 이용자 식별정보를 연계하여 제공되는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사기 등 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가 다른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범죄 관련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며,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4조의3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3(메신저 서비스의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부가통신역무(이하 “메신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이하 “메신저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메신저서비스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메신저서비스 가입 시 접속 국가와 메신저서비스 이용 시 접속 국가가 다를 경우 이를 표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2. 메신저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관련 의심 계정(메신저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고를 위한 상시 신고 체계 구축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메신저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계정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자 및 해당 계정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8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8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4조의3(메신저 서비스의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부가통신역무(이하 “메신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이하 “메신저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메신저서비스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이용자의 메신저서비스 가입 시 접속 국가와 메신저서비스 이용 시 접속 국가가 다를 경우 이를 표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u> <u>2. 메신저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관련 의심 계정(메신저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u>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7. (생략)

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신고를 위한 상시 신고
체계 구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메신저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계정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자 및 해당 계정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과태료) ①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8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8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